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 방법

가.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발표 서비스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 기간: 2024. 12. 04.(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행정사 홈페이지 활용]	[큐넷 홈페이지 활용]
행정사 홈페이지 접속 (http://www.Q-Net.or.kr/site/CPL)	Q-Net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Q-net.or.kr)
▼	▼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 조회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시험결과확인
▼	▼
발표 중인 시험 - 행정사 자격시험 선택	국가전문자격(탭이동) - 발표중인 행정사 자격시험 선택
▼	▼
전체 합격자* 보기/개인별 득점조회	전체 합격자* 보기/개인별 득점조회

※ 전부면제자 시험합격자는 전체 명단에서만 확인 가능

나. 개별 합격 여부는 2024. 12. 04.(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 전화 (ARS, 유료)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응시자만 해당)

2. 제12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시행현황

- 시험일자: 2024. 10. 05.(토), 09:30~13:20
- 시행지역: 서울·부산(2개 지역)
- 합격자 발표일시 : 2024. 12. 04.(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불합격 여부, 총득점 등
- 합격자 결정 기준(2024년도 최소 합격 인원 300명)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 합격자 결정기준

「행정사법」시행령 제17조

-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 최소선발인원이 적용되는 일반·해사행정사(공무원 경력에 의해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응시자 포함) 2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공무원 경력 일부과목 면제 합격자 수에 상관없이 일반응시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함(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3. 시행·채점 및 합격 인원

(단위: 명, %)

구 분	대상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일반	전부면제	
계	3,185	2,431	754	76.32	11,150		12.58
					306	10,844	
일반행정사	3,033	2,313	720	76.26	10,898		11.37
					263	10,635	
외국어번역행정사	140	109	31	77.86	55		36.69
					40	15	
해사행정사	12	9	3	75.00	197		33.33
					3	194	

※ 합격선: 일반행정사 53.83점, 외국어번역행정사 47.66점, 해사행정사 51.75점

* 제12회 행정사 시험 최소선발인원은 300명(일반: 257명, 외국어번역: 40명, 해사: 3명)이나, 2차 시험 채점 결과 합격자는 306명(일반: 263명, 외국어번역: 40명, 해사: 3명)으로 결정.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자격증 발급 일정: 2024. 12. 05.(목) 09:00부터

나. 자격증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 및 발급

- ①신분증,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 방문 → ②신청서*(시·군·구청 비치) 작성 → ③신청서, 신분증, 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④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작성(신분증, 사진 필요)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

○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출력

-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진 파일(jpg) 등록 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출력

※ 신규 발급의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 1588-2188

〈 준비사항 상세 안내 〉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6. 행정사 실무교육 및 환영회 안내

가. 실무교육 이수 및 신청

-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사 실무교육 60시간(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실무교육 운영기관인 대한 행정사회로 관련 일정을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https://www.daaa.or.kr> (전화) 02-6952-4058~9

나. 제12회 행정사 합격자의 환영회 안내

- 행사일시 : 2024. 12. 7.(토) 오후 2시
- 행사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충무로역) 신공학관 4층 강당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링크: <http://shorturl.at/oZKrM>

※ 사전접수 링크: <https://naver.me/58NvOwBW>(복사해서 붙여넣기)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https://www.daaa.or.kr> (전화) 02-6952-4058~9

7. 기타 안내

가. 결격사유 확인 관련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격 사실 및 자격이 상실됩니다.

[붙임]

제12회 행정사 제2차 시험 합격자 통계

1. 시행현황 및 합격 인원

(단위: 명, %)

구 분	대상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일반	전부면제	
계	3,185	2,431	754	76.32	11,150		12.58
					306	10,844	
일반행정사	3,033	2,313	720	76.26	10,898		11.37
					263	10,635	
외국어번역행정사	140	109	31	77.86	55		36.69
					40	15	
해사행정사	12	9	3	75.00	197		33.33
					3	194	

※ 합격률은 일반응시자 기준임(전부 면제 합격 인원 제외)

2. 과목별 채점 결과

(단위: 명, 점)

구 분	응시인원	응시자 평균점수	40점 미만자 수
민법(계약)	2,429	42.60	971
행정절차론	2,422	38.24	1,198
사무관리론	2,300	33.58	1,485
행정사실무법	2,193	37.31	1,159
해사실무법	9	51.70	3

※ 일반응시자 기준

3. 합격자 연령별 현황

가. 행정사 전체(면제자 포함)

(단위: 명)

구 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면제포함)	11,150	1	25	1,239	5,564	3,331	854	131	5
일반행정사	10,898	1	21	1,211	5,457	3,232	843	128	5
외국어번역행정사	55	0	3	7	17	21	6	1	0
해사행정사	197	0	1	21	90	78	5	2	0

나. 일반응시자(면제자 제외)

(단위: 명)

구 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면제자제외)	306	1	25	101	97	71	11	0	0
일반행정사	263	1	21	94	80	58	9	0	0
외국어번역행정사	40	0	3	7	15	13	2	0	0
해사행정사	3	0	1	0	2	0	0	0	0

4. 합격자 성별 현황

가. 행정사 전체(면제자 포함)

(단위: 명)

종목명	합 계	남 성	여 성
전체(면제포함)	11,150	6,044	5,106
일반행정사	10,898	5,820	5,078
외국어번역행정사	55	35	20
해사행정사	197	189	8

나. 일반응시자(면제자 제외)

(단위: 명)

종목명	합 계	남 성	여 성
전체(면제자제외)	306	177	129
일반행정사	263	151	112
외국어번역행정사	40	23	17
해사행정사	3	3	0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시험 면제 여부	①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②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 등록 []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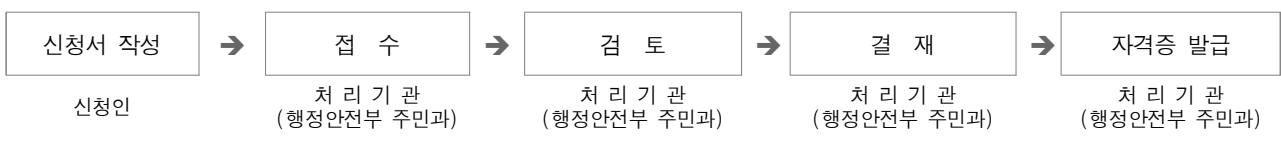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